

연봉제 교원 보수 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급여를 연봉제 교원으로 임용하는 성결대학교 교원 보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신규 임용되는 정년제 전임교원에게 적용한다.

② 연봉제 교원 보수 규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보수 규정 제2장을 적용한다.

제3조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① “연봉제”라 함은 급여를 연단위로 결정하여 지급하는 급여 제도를 의미한다.
- ② “연봉”이라 함은 1년간 지급되는 보수를 합한 금액을 말한다.
- ③ “기본급”이라 함은 연봉 결정의 기준금액을 말한다.
- ④ “성과급”이라 함은 조직이나 개인의 업적평가 결과에 따라 개인에게 차등 지급하는 변동성 급여를 말한다.
- ⑤ “연봉월액”이라 함은 연봉액을 12개월로 나누어 매월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 ⑥ “본봉”이라 함은 연봉월액의 30%를 말하며, “봉급”이라 함은 연봉월액의 40%를 말한다.
- ⑦ “초임연봉”이라 함은 임용 될 때 최초로 확정된 호봉의 연봉액을 말한다.
- ⑧ “경력년수”라 함은 근무 또는 연구경력 년수를 말한다.
- ⑨ “수당”이라 함은 직무여건 및 생활여건 등에 따라 지급되는 부가급여를 말한다.

제4조 (연봉) ① 교원에게는 그 자격과 경력에 따라 연봉을 지급한다.

② “연봉”의 구성은 기본급과 성과급으로 한다.

제5조 (기본급 결정) ① 기본급이란 연봉 결정의 기준금액을 말한다.

② 2019년 3월 이후에 신규 임용된 전임교원에게는 <표 1>과 같이 연봉을 지급한다.

③ 2019년 3월 전에 신규 임용된 전임교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 정근수당, 체력단련비, 호도휴가비 및 기타 제수당은 기본급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제6조 (연봉의 지급) 연봉은 연봉 월액으로 지급하며, 당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근무에 대하여 당월 25일에 지급한다.

제7조 (연봉 등의 계산) ① 신규채용, 승진, 전보, 감봉, 기타 임용에 있어서 발령일을 기준으로 연봉월액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② 호봉에 따른 교원 연봉표 <표 1> 금액을 12개월로 나누어 연봉월액을 지급한다.

연봉제 교원 보수 규정(5-2-11)

제8조 (연봉의 조정) ① 휴직, 정직 또는 직위해제 중인 자에 대하여는 복직 시에 조정한다.

② 연봉 계약에 따라 매년 연봉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총장이 정한다.

③ 보수규정 제12조(승급)를 원칙으로 하며, 승급월이 연봉계약 기간을 초과할 경우 승급월이 도래할 때까지 기존 연봉월액을 지급한다.

제9조 (계약제 전임교원 연봉) 계약제 전임교원인 강의전담, 연구, 산학, 외국인(원어민) 교원의 연봉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총장이 정한다.

제10조 (초임호봉) 교원의 초임호봉은 제11조의 범위 내에서 총장이 정한다.

제11조 (초임호봉 확정) 교원의 초임호봉 확정은 교원인사규정 제13조에 의하여 산출한 경력에 따라 정하되 연봉산정 기준호봉 상한범위를 다음과 같이 정한다.

구 분	상한 호봉	하한 호봉	비 고
교 원	15호봉	7호봉	

제12조 (연봉계약) ① 연봉계약기간은 1년 단위로 한다.

② 계약의 당사자는 총장과 교원 개인이 되며 연봉계약을 체결한다. 다만, 총장의 위임을 받은 자가 대신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13조 (연봉결정통보) ① 소정의 절차를 거쳐 교원별 연봉이 결정되면 총장 또는 총장의 위임을 받은 자가 교원 개인에게 연봉을 서면상으로 통보함으로써 계약서 작성에 갈음할 수 있다.

② 연봉을 통보받은 교원이 통보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연봉계약이 최종 성립된 것으로 간주한다.

제14조 (보직수당) 교원이 보수규정 제18조에 해당하는 직에 보임될 때는 보수규정의 보직수당을 지급한다.

제15조 (겸직수당) 교원이 보직을 겸할 때에는 겸직에 대한 보직수당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겸직의 보직수당이 본직보다 많을 때는 겸직의 보직수당만을 지급한다.

제16조 (성과급) 연구과제 수주에 따른 인센티브 및 논문장려금, 취업수당 등 성과급을 지급하며, 지급금액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17조 (세부사항) 이 규정 외에 연봉제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